

세계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 (한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
- (일본) 코로나 사태와 향후 일본의 지역활성화 대책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임팩트 프로젝트(Project imPACT)”
- 전과자 취업 지원을 통한 재범 예방정책

지방재정

- (독일) 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8년 개정이후 3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배경

-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
-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 비교

분야	현행	개정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4조)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관련 미규정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 규정없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제74조)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제43조)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제65조)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시사점

- 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게 하고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점은 지방의회의 사무극이 소규모이고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사무감독관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보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입법, 예산 등의 분야에서 지방의회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어울리지 않으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구체적인 운용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다만 전문인력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정례회는 1년에 2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독일은 적어도 1달에 한 번은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수집 규정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음. 또한 위원회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반영된 것도 지방의회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의원들의 윤리성 강화이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화하고 원칙적으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반영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짐. 다만 윤리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윤리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